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9(수) 10:00

제25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82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5. 3. 28.
라. 회부일자 : 2025. 3. 28.

2. 제안이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76,986,391천원(일반 8,070,78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B)	기정액			1회추경 (안) (B)	비고
			소계 (A)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776,986,391	768,915,603	764,927,053	3,988,550	8,070,788	
일 반 회 계		754,545,611	746,474,823	743,148,273	3,326,550	8,070,788	
특 별 회 계		22,440,780	22,440,780	21,778,780	662,000	-	
	의료급여기금	634,164	634,164	634,164	-	-	
	주 차 장	21,806,616	21,806,616	21,144,616	662,000	-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복 지 가 족 국		402,067,819	401,834,806	233,013	0.06 %
복	지 정 책 과	13,608,961	13,608,961	0	0.00 %
복	지 지 원 과	106,960,835	106,960,835	0	0.00 %
어	르 신 장 애 인 과	190,455,159	190,372,799	82,360	0.04 %
가	족 정 책 과	75,392,503	75,239,606	152,897	0.20 %
아	동 청 소 년 과	15,650,361	15,652,605	△2,244	△0.01 %
푸 른 미 래 도 시 국		17,961,805	17,669,805	292,000	1.65 %
주	택 과	980,037	980,037	0	0.00 %
도	시 계 획 과	689,997	689,997	0	0.00 %
주	거 정 비 과	1,060,697	1,060,697	0	0.00 %
공	원 녹 지 과	14,803,667	14,533,667	270,000	1.86 %
건	축 과	427,407	405,407	22,000	5.43 %
문 화 환 경 국		75,812,232	74,762,982	1,049,250	1.40 %
문	화 체 육 과	24,778,235	24,419,605	358,630	1.47 %
청	소 행 정 과	47,567,753	47,228,953	338,800	0.72 %
환	경 과	2,592,271	2,592,271	0	0.00 %
부	동 산 정 보 과	873,973	522,153	351,820	67.38 %

(단위:천 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교 통 건 설 국		50,608,703	50,185,537	423,166	0.84 %
	교 통 행 정 과	3,344,212	2,921,046	423,166	14.49 %
	주 차 관 리 과	23,906,800	23,906,800	0	0.00 %
	건 설 행 정 과	4,848,513	4,848,513	0	0.00 %
	도 로 과	8,795,514	8,795,514	0	0.00 %
	치 수 과	9,713,664	9,713,664	0	0.00 %

○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1회추경 (안)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회추경	
특		별 회 계	22,440,780	22,440,780	21,778,780	662,000	0	-
		의료급여기금	634,164	634,164	634,164	0	0	-
		주 차 장	21,806,616	21,806,616	21,144,616	662,000	0	-

5. 복지가족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1회 추경(안) ②
어르신장애인과					
	독산2동 어르신 쉼터 원상 복구	임차 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 원상 복구 공사	8,250	0	8,250
	경로당 부식비 지원	경로당 78개소 부식비 추가 지원	1,217,190	1,186,080	31,110
	구립 하누리 주간보호센터 국유지 대부료	무상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국유지 대부료	43,000	0	43,000
가족정책과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한시 지원(구 자체)	76,000	0	76,000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자체)	시비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구 자체 사업 종료	0	354,873	-354,873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보조)	시비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대 지원	856,538	424,768	431,770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감추경	393,924	396,168	-2,244

6. 검토 의견

가. 구 예산 규모 및 편성방향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이 즉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긴급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예산편성 후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분 등 필수경비를 주요 변경 사유로 편성되었음.
- 우리 구 전체 예산안 편성 현황은
당초예산은 7,649억 2,705만원으로, 그동안 간주 처리한 39억 8,855만원과 금회 추경 80억 7,078만원을 합쳐, 최종예산은 7,769억 8,639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05% 증가하였음

나. 복지가족국 추경예산안

-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 2억 3,301만원이 증액되어, 총 4,020억 6,78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1.75%에 해당됨.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1) 어르신장애인과

기정예산(1,903억 7,279만원)에서 금회 8,236만원 증액

주요 편성내용으로

독산2동 어르신쉼터 복구 공사 825만원 증액

경로당 부식비 지원 3,111만원 증액

구립 하누리주간보호센터 국유지 대부료 4,300만원 증액

2) 가족정책과

기정예산(752억 3,960만원)에서 금회 1억 5,289만원 증액

주요 편성내용으로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 7,600만원 증액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보조) 4억 3,177만원 증액

3) 아동청소년과

기정예산(156억 5,260만원)에서 금회 224만원 감액

주요 편성내용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224만원 감액

다. 검토의견

2025년도 제1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와 복지업무 특성상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비를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업 효과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집행이 요구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